

教育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提出年月日：1980. . .

提出者：政府

提案理由

教育正常化施策의一環으로 教育大學의修業年限을 4年으로 延長하고, 大學의 聽講生制度를 廢止하며, 大學入學制度와 高等學校入學制度를 改善함。

主要骨子

- (1) 高等學校의 入學은 市·道別로 施行하는 選拔考查에 의하여서만 入學할 수 있는 것 을, 内申成績과 選拔考查를 併合한 方法에 의해서도 入學할 수 있게 함。(第107條의2)
- (2) 大學入學豫備考查制를 大學入學學力考查制로 变更하여 그 重要事項을 規定하는 한편,

考査의 施行과 大學入學選拔方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도
록 함.(第 111 條, 第 111 條의 2)

- (3) 大學의 聽講生制度를 廢止하여 大學教育의
正常化를 기함.(第 114 條)
- (4) 現在 2 年制인 教育大學의 修業年限을 4
年으로 延長함.(第 120 條)
- (5) 國家技術資格法 施行으로 實效性이喪失된
技術員資格証制度를 廢止함.(第 136 條)
- (6) 教員資格基準등을 改善 調整함.

法律 第 號

教育法中改正法律 嫌

教育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 19 條의 題目을 “(教育委員의 兼職禁止)”로 하고,
同條 第 1 項中 “私立學校法人”을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法人”으로 하여, 同條 第 2 項을 削除 한다.

第 20 條의 題目을 “(選出委員의 辞任)”으로 하고,
同條中 “委員會”를 “教育委員會”로 한다.

第 21 條의 題目을 “(選出委員의 解任要求)”로 하고,
同條中 “委員會”를 “教育委員會”로 한다.

第 80 條의 題目을 “(教育會)”로 하고, 同條에 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會의 組織方法과 運營에 관한 基本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03 條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03 條(入學資格) 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國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

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第 107 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07 條의 2 (高等学校入学方法) ①高等学校의 入学은 서 울特別市·釜山市·道別로 施行하는 選拔考査에 의하거나, 内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銓衡에 의하되, 그 入学의 方法과 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内申成績 또는 選拔考査에 의하지 아니하고 入学시킬 수 있다.

1. 外國에서 9 年이상의 學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

2. 外國의 學校에서 國內의 中學校에 轉學 또는 編入學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3. 特殊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實業系 高等學校로 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学校에 入学하는 者

② 第 1 項第 3 号에 해당하는 学校를 제외한 實業系 高等學校와 芸能·体育系高等學校등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学校에 대하여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内申成績 또는 選拔考査에 의하는 外에 그 入學의 方法과 節次등에 관하여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 111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11 條 (大學入學資格) ①大學 (師範大學 · 教育大學 · 專門大學을 包含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以上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施行하는 大學入學學力考查 (이하 “學力考查”라 한다)를 거친 者로 한다. 다만,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學力考查를 免除할 수 있다.

1. 外國에서 12年以上의 學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

2. 外國의 學校에서 國內의 高等學校에 轉學 또는 編入學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學力考查는 每年 施行하되, 그 學力考查成績은 当該年度에 限하여 效力이 있다.

③學力考查의 施行方法 기타 菲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11 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111 條의 2 (大學入學方法) 大學의 入學은 第 111 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選拔方法에 의한다.

第 112 條의 題目을 “(大學院의 修業年限 및 入學資格)”
으로 하고, 同條 第 2 項中 “師範大學” 을 “師範大學 · 教育大學” 으로 한다.

第 114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14 條(公開講座) 大學에는 學生以外의 者를 對象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들 수 있다.

第 115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15 條(學位) ①大學 · 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의 定員內의 學生으로서 所定의 全課程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大學院에서 所定의 課程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한다.

②大學 · 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에서 3 年이상 履修한 定員內의 學生으로서 成績이 特히 優秀하여 所定의 全課程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早期 履修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第 110 條, 第 120 條 및 第 122 條의 規定에 의한 修業年限에 達하기 前에 學士學位를 수여 할 수 있다.

③大學校 (大學院을 둔 単科大學을 포함한가)에서는

博士學位를 수여할 수 있다.

④第 1 項 내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位를 수여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教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⑤學位授与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20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20 條 (修業年限) 教育大學의 修業年限은 4 年으로 한다.

第 128 條의 4 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28 條의 4 (大學編入學)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는 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다.

第 133 條의 題目을 “(高等技術學校의 入學資格).” 으로 하고, 同條中 “3 年制 技術學校” 다음에 “3 年制 高等公民學校” 를 插入한다.

第 136 條를 削除한다.

第 143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43 條 (目的) 特殊學校는 視聽覺 障碍者등 心身障礙者에게 幼稚園·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 準한 教育과 그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 및 技能을

가르침을 目的으로 한다.

第152條의 題目을 “(授業)”으로 하고, 同條 第1號中 “師範大學” 다음에 “教育大學”을 插入한다.

第154條의 題目을 “(學年制)”로 하고, 同條 第1項中 “師範大學” 다음에 “教育大學”을 插入한다.

第155條의 題目을 “(學科·教科)”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大學·師範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各種學校를 제외한 各學校의 學科 및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教育課程은 文教部長官이 정한다.

第163條 本文中 “5萬원”을 “100萬원”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削除하며, 同條第4號中 “第115條第1項”을 “第115條第1項·第2項”으로, “卒業証書를 交付한者”를 “學位를 수여한 者”로 한다.

第164條 및 第165條중 “3千원”을 “10萬원”으로 한다.

第166條중 “5百원”을 “5萬원”으로 한다.

第8條第2項·第18條第2項·第22條第2項·第30條第2項·第84條第2項·第96條第2項·第114條의 2第2項·第140條第2項·第154條第2項 및 第158條第2項中 “前項”을 각각 “第1項”으로 하고, 第23條第3項 및 第69條第3項中 “前項”을 각각 “第2項”으로 하며, 第8條第4項 및 第29條第4項中 “前項”을 각각 “第3

項”으로 하고, 第 75 條 第 4 号中 “前 3 号”를 “第 1 号” 내지 “第 3 号”로 한다.

第 2 條中 “前條”를 “第 1 條”로, 第 94 條中 “前條”를 “第 93 條”로, 第 97 條中 “前條”를 “第 96 條”로, 第 101 條中 “前條”를 “第 100 條”로, 第 105 條中 “前條”를 “第 104 條”로, 第 119 條中 “前條”를 “第 118 條”로, 第 130 條中 “前條”를 “第 129 條”로, 第 147 條中 “前條”를 “第 146 條”로 한다.

[別表 1] 教師資格基準의 國民學校 正教師 (1 級) 欄에 第 3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國民學校 正教師 (2 級) 資格證을 所持하고 教育大學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初等教育課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 年以上의 教育經歷이 있는 者 同表의 幼稚園 正教師 (1 級) 欄에 第 3 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幼稚園 正教師 (2 級) 資格證을 所持하고 教育大學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幼稚園 教育課程을 專攻하여 碩士學位를 받은 者로서 1 年以上의 教育經歷이 있는 者

同表의 中等學校 正教師(2級)欄중 第8号를 削除 한다.

同表의 國民學校 正教師(2級)欄의 第3号 내지 第6号 를 第4号 내지 第7号로 하고, 第3号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教育大學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初等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同表의 幼稚園 正教師(2級)欄의 第1号중 “專門大學을”을 “專門大學 및 이와 同等以上의 各種學校를”으로 하고, 同欄의 第2号 및 第3号를 第3号 및 第4号로 하며, 第2号를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2. 教育大學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幼稚園 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同表의 司書教師欄에 第3号를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3. 教育大學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學院의 教育科에서 司書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同表의 養護教師欄의 資格基準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大學의 看護學科 卒業者로서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
2. 專門大學의 看護科 卒業者로서 在學중 所定의
教職學點을 履修하고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
〔別表 3〕 大學教員資格基準의 備考欄 第 1 号를
음과 같이 한다.
1. 이 表중 大學은 師範大學 · 教育大學을, 專門大學은
放送通信大學 (專門大學 卒業學歷이 인정되는 課
程을 말한다) 및 종전의 教育大學 · 初級大學 ·
專門學校 · 實業高等專門學校를 포함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法은 1981 年 3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 107 條의 2 의 規定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高等學校 入學選拔考查를 實施하고 있던 地域을
제외한 地域에 대하여는 그 施行日을 따로 文教
部令으로 정한다.
- ② (教育大學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의
教育大學은 1985 年 2 月 末 日까지 이 法에 의한 教

育大學(4年制)으로 改編되어야 하며, 그 改編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教育大學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③(教育大學學生에 대한 經過措置) 1985年2月末
日까지 旧制教育大學(2年制)에 在學中인 學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卒業한다.

④(教育大學教員에 대한 經過措置) 附則 第2項
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教育大學(4年
制)으로 改編될 당시의 旧制教育大學에 在職中인
教員은 이 法 別表3의 資格基準에 의하여 그 改
編된 教育大學(4年制)의 教員으로 再任用한다.

⑤(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
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 19 條 教育委員은 国会 議員·地方議会委員·公 務員(大学의 教員은 除外한다), 당해 教育 委員會의 監督에 속하 는 私立学校教員과 私 <u>立学校法人의</u> 任員 또 는 私立学校 経營者를 겸할 수 없다.</p> <p>②教育委員은 政党 또 는 기타 政治團體에 参与하거나 加入하지 못한다.</p> <p>③(省 略)</p>	<p>第 19 條(教育委員의 兼職 禁止) ①..... <u>立学校를 設置·經營하</u> <u>는 法人의</u> ②<削除> ③(現行과 同一)</p>
第 20 條 選出委員은 당	第 20 條(選出委員의 辞任)

新 設 <

第 103 條 中学校에 入学
할 수 있는 者는 國
民学校를 卒業한 者 또
는 外國에서 6 年이상
의 学校教育課程을 修
了한 者로 한다.

第 107 條의 2 高等学校의
入学은 서울特別市・釜
山市・道別로 施行하는
選拔考査에 의하되 그
入学의 方法과 節次 기
타 필요한 事項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會의 組織方法과 運當에 関한 基本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3條(入学資格).....

는 이 와 同等以上의 学
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

第 107 條의 2 (高等学校入
学方法) ①高等学校의
入学은 서울特別市·釜
山市·道別로施行하는
選拔考査에 의하거나,
内申成績과 選拔考査를
併合한 銓衡에 의하되,

現 行	改 正 (案)
<p>다만,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에 대 하여는 <u>選拔考査를 免</u> <u>除할 수 있으며, 第 3</u> <u>號에 해당하는 学校를</u> <u>제외한 實業系高等学校</u> <u>와 芸能·体育系高等学校</u> <u>校 등 大統領令으로</u> <u>定하는 学校에 对하여</u> <u>는 選拔考査를 除外한</u> <u>入学의 方法과 節次 등</u> <u>에 관하여 特例를 定</u> <u>할 수 있다.</u></p> <p>1. 外国에서 9年이상 의 学校教育課程을 履修한 者</p>	<p>그 入学의 方法과 節 次 기타 필요한 事項 은 大統領令으로 정한 다: 다만, 다음 各號 의 1에 해당하는 者 에 대하여는 <u>内申成績</u> <u>또는 選拔考査에 의하</u> <u>지 아니하고 入学시킬</u> <u>수 있다.</u></p> <p>1. (現行과 같음)</p>

2. 外國의 学校에서

国内의 中学校에 転

学 또는 編入学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

領令으로 정하는 者

3. 特殊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實業系高等學

校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学校에 入學

하는 者

2. (現行과 같음)

3. (現行과 같음)

②第1項第3號에 해당

하는 学校를 제외한

實業系高等学校와 芸能

体育系高等学校 등 文

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学校에 대하여는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内

申成績 또는 選拔考查

現 行	改 正 (案)
<p>第 111 條 ①大学 (教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에 <u>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u>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u>대학입학 예비고사 (이하 “예비고사”라 한다)에 합격한 자로 한다.</u></p>	<p>에 의하는 外에 그 入學의 方法과 節次 등에 관하여 特例를 정할 수 있다.</p> <p>第 111 條 (<u>大学入学資格</u>)</p> <p>①大学 (師範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을 포함한다)에 <u>入学할 수 있는 者는 高等学校를卒業한 者 또는 이와同等以上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서文教部長官이 施行하는大学入学学力考査 (이하 “学力考査”라 한다)를 거친 者로 한다.</u></p>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豫備考査를 免除할 수 있다.

1. 外国에서 12年 이상의 学校教育課程을履修한 者

2. 外国의 学校에서 国内の 高等学校에 転学 또는 編入学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3. 高等学校를 卒業한 者로서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能士 2 級 이상의 国家技術資格을 取得한 者중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学力考査를 免除할 수 있다.

1. 外国에서 12年 이상의 学校教育課程을履修한 者

2. 外国의 学校에서 国内の 高等学校에 転学 또는 編入学하여 卒業한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 学力考査는 每年 施行하되, 그 学力考査成績은 当該年度에 限하여 效力이 있다.

③ 学力考査의 施行方法

現 行	改 正 (案)
<p><u>専門大学의 해당학과</u> <u>에 入学하고자 하는</u> <u>者.</u></p>	<p>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 統領령으로 定한다.</p>
<p><u>4. 高等学校를 卒業하</u> <u>고 産業체에 근무하</u> <u>는 者중 大学(専門</u> <u>대학을 포함한다)에</u> <u>入学하고자 하는 者</u> <u>로서 勤務成績 등 大</u> <u>統領령으로 정하는 要</u> <u>件에 해당하는 者</u></p>	<p>第 111 條의 2 (大学入学方法) 大学의 入学은 第 111 條 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 하는 選拔方法에 의 한다.</p>
<p><u>③예비고사는 매년 문</u> <u>교부장관이 시행하되</u> <u>그 합격은 응시자가</u> <u>지원한 서울특별시·부</u> <u>산시·도별로 결정한다.</u></p>	

④豫備考査에 合格한
者는 당해 学年度에
한하여 大学에 入学할
수 있다.

⑤豫備考査에 合格한
者는 그가 志願하여
合格된 당해 서울特別
市·釜山市。道에 所在
한 大学에 한하여 入
学할 수 있다.

⑥豫備考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
령으로 정한다.

第 112 條 ①大学院의 修
業年限은 2 年이 上으로
한다.

②大学院에 入学할 수
있는 者는 大学。師範

<削除>

<削除>

<削除>

第 112 條 (大学院의 修業
年限 및 入学資格) ①
(現行과 같음)

②大学院에 入学할 수
있는 者는 大学·師範

現 行	改 正 (案)
<p><u>大学을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이 상의 学力이 인정된 者로 한다.</u></p> <p><u>第 114 條 (公開講座) 大学에는 生涯教育講座 및 公開講座를 들 수 있으며 聽講生을 받을 수 있다. 前項의 聽講生에 대하여는 3 科 目 이내에 한하여 受講하게 할 수 있다.</u></p> <p><u>第 115 條 (卒業 및 学位 등) ①大学 및 師範大学의 定員內의 学生으로서 所定의 課程을</u></p>	<p><u>大学・教育大学을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学力이 있다 고 인정된 者로 한다.</u></p> <p><u>第 114 條 (公開講座) 大学에는 学生이외의 者를 対象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들 수 있다.</u></p> <p><u>第 115 條 (学位) ①大学・師範大学 및 教育大学의 定員내의 学生으로서 所定의 全課程을</u></p>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卒業証書를 수여한다.

다만, 大学 및 師範大

学에서 3年이상 履修

한 学生으로서 成績이

특히 優秀하여 所定의

課程을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따라 早期

履修한 者에 대하여는

第 110 條 및 第 122 條

의 規定에 의한 修業

年限에 달하기 전에 卒

業証書를 수여할 수 있

다.

②大学 및 師範大学에

서 所定의 課程을 履

修(早期履修를 포함한

다) 하고 일정한 試

履修하고 一定한 試験

에 合格한 者에 대하

여는 学士学位를, 大学

院에서 所定의 課程을

履修하고 一定한 試験

에 合格한 者에 대하

여는 碩士学位를 수여

한다.

②大学・師範大学 및 教

育大学에서 3年이상

履修한 定員內의 学生

으로서 成績이 特히 優

現 行	改 正 (案)
験에 합格한 者에 대 하여는 学士学位를 大 学院에서 所定의 課程 을 履修하고 일정한 試験에 합格한 者에 대 하여는 碩士学位를 授 与한다.	秀하여 所定의 全課程 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早期履修하 고 一定한 試験에 합 格한 者에 대하여는 第 110 條・第 120 條 및 第 122 條의 規定에 의 한 修業年限에 達하기 전에 学士学位를 수여 할 수 있다.
③第 2 項의 規定에 의 하여 学位를 수여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文教 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大学校(大学院을 둔 單科大学을 포함한다) 에서는 博士学位를 수 여 할 수 있다.
④大学校(大学院을 둔 單科大学을 포함한다)	④第 1 項 내지 第 3 項 의 規定에 의하여 学

에서는 博士学位를 수여
할 수 있다.

⑤学位授与에 관하여 必
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
로 정한다.

第 120 條 教育大学의 修業
年限은 2 年으로 한다.

第 128 條의 4 (大学編入学)
専門大学을 卒業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同系大学의 해당 学
科에 한하여 編入学할 수
있다.

第 133 條 高等技術学校에 入
학할 수 있는 者는 3

位를 수여받은 者는 大
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教部에 登錄
하여야 한다.

⑤学位授与에
.....
.....

第 120 條 (修業年限) 教
育大学의 修業年限은
4 年으로 한다.

第 128 條의 4 (大学編入学)
専門大学을 卒業한 者
는 大学에 編入学할 수
있다.

第 133 條 (高等技術学校의
入学資格) 高等技術学

現 行	改 正 (案)
<p>年制 技術学校, 中学校 를 卒業한 者 또는 이 와 同等이상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 다.</p> <p><u>第 136 條 技術学校, 高等 技術学校 또는 實業系 高等学校의 修了者 또 는 卒業者에게는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技術員 資格証을 줄 수 있다.</u></p> <p><u>第 143 條 特殊学校는 盲 者, 聾啞者, 精神薄弱者,</u></p>	<p>校에 入学할 수 있는 者는 3 年制 技術学校, <u>3 年制 高等公民学校,</u> 中学校를 卒業한 者 또 는 이와 同等이상의 学力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한다.</p> <p><u>第 136 條 <削 除></u></p> <p><u>第 143 條 (目的) 特殊学 校는 視聽覺 障碍者 등</u></p>

其他 心身에 障碍가 있
는 者에게 国民学校, 中
学校에 準한 教育과 그
實生活에 必要한 知識,
機能을 가르침을 目的으
로 한다. 特殊学校에는
特殊学校를 卒業한 者중
高等学校에 準하는 教育
을 目的으로 하는 高等
学校 課程을 併設할 수
있다.

第 152 條 (省 略)

1. 中学校, 高等学校, 大
学, 師範大学, 專門大学
은 夜間授業 또는 季
節授業을 할 수 있다.

2.~4. (省 略)

心身障礙者에게 幼稚園,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
學校에 準한 教育과 그
實生活에 必要한 知識
및 機能을 가르침을
目的으로 한다.

第 152 條 (授業) (現行과
같음)

1. 師範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
.....
.....

2.~4. (現行과 같음)

現 行	改 正 (案)
<p>第 154 條 大学, 師範大学, 專門大学과 各種学校 를 제외한 各級学校, 学生의 進級 또는 卒 業은 学年制로 한다.</p> <p><u>前項</u> 이 외의</p>	<p>第 154 條 (<u>学年制</u>) ①大 学, 師範大学, <u>教育大学</u>, 專門大学과 各種学校 를 제외한 各級学校 student의 進級 또는 卒 業은 学年制로 한다.</p> <p>②<u>第 1 項이 외의</u></p>
<p>第 155 條 大学, 師範大学, 各種学校를 제외한 各 学校의 学科,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u>各教科</u> 의 <u>教授要旨</u>, <u>要目及</u> <u>授業時間數</u>는 文教部長 官이 정한다.</p> <p>②~④ (省 略)</p>	<p>第 155 條 (<u>学科, 教科</u>) ① 大学, 師範大学, <u>教育大 学, 專門大学</u> 各種学校 를 제외한 各学校의 学科, 教科는 大統領令 으로 <u>教育課程</u>은 文教 部長官이 정한다.</p> <p>②~④ (現行과 같음)</p>
<p>第 163 條 다음 각號의 1 에 該當하는 者는 1</p>	<p>第 163 條</p>

年以下의 懲役이나 禁 錮 또는 5 萬 원 以下의 罰金에 处한다. 100 萬 원
1. (省 略)	1. (同 一)
2. (省 略)	2. (同 一)
3. 第 114 條 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削 除>
4. <u>第 115 條 第 2 項의</u> 規定에 違反하여 <u>卒</u> <u>業証書를 交付한 者</u>	4. <u>第 115 條第 1 項·第</u> <u>2 項의</u> 規定에 違反 하여 <u>学位를 授与한</u> 者
5. (省 略)	5. (現行과 同一)
第 164 條 第 9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履行의 督促을 받고 이를 履行 하지 않는 者는 3 千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 164 條 10 萬 원
第 165 條 第 97 條의 規定에	第 165 條

違反한 者는 <u>3千원</u> 以 下의 罰金에 處한다. <u>10萬원</u>
第 166 條 第 140 條의 規定 에 의한 義務履行의 督 促을 받고도 이를 履行 하지 않는 者는 <u>5百원</u>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u>5萬원</u>

教 師 資 基 準

現 行					改 正 (案)				
	中等学校	國民学校	特殊学校	幼稚園		中等学校	國民学校	特殊学校	幼稚園
正教師 (1級)	1 - 4 (省略)	1 - 2 (省略) <u><新設></u>	1 - 2 (省略)	1 - 2 (省略) <u><新設></u>	師 及	1 - 4 (現行과 같음)	1 - 2 (現行과 같음)	1 - 2 (現行과 같음)	1 - 2 (現行과 같음)
正教師 (2級)	1 - 7 (省略)	1 - 2 (省略) <u><新設></u>		1. 大学(専門大学을 包含한다) 卒業者 로서 在学中 所定의 保育科 教職学点을	師 級	1 - 2 (現行과 같음)	1 - 2 (現行과 같음)	1. 大学(専門大学 및 이와 同等以上의 各種学校를 包含 한다) 卒業者로서	

한국

現 行					改 正 案				
	中等学校	國民学校	特殊学校	幼稚園	中等学校	國民学校	特殊学校	幼稚園	
				履修한 者 <u>8. 大学卒業者로서</u> 中等学校 正教師 (2 級)의 資格 検定에 合格한 者 9. (省略)	3 - 6 <u><新設></u> 2 - 3 (省略)		定하는 大学院保育科에서 初等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学位를 받은 者 <u>8.<削除></u> 4 - 7 (現行 第3号 내지 第6号와 같음) 9.(現行과 같음)		在学中 所定의 保育科 教職학점을 履修한 者 <u>2.教育大学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学院 教育科에서 幼稚園 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学位를 받은 者</u> 3 - 4 (現行 第2号 및 第3号와 같음)
準教師	1 - 2 (省略)	1 - 3 (省略)		1 - 2 (省略)	教師	1 - 2 (現行과 같음)	1 - 3 (現行과 같음)	1 - 2 (現行과 같음)	

한국

現 行					改 正 (案)							
	中等学校	國民学校	特殊学校	幼稚園		中等学校	國民学校	特殊学校	幼稚園			
教導教師	1 - 4 (省略)	1 - 2 (省略)			教師	1 - 4 (現行과 같음)		1 - 2 (現行과 같음)				
司書教師	1 - 2 (省略) <u><新設></u>				教師	1 - 2 (現行과 같음)	<u>3. 教育大学院 또는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大学院 教育科에서 司書教育課程을 專攻하고 碩士学位를 받은 者</u>					
養護教師	1. 大学의 看護学科를 卒業한 者 2. 看護系学校 (高等学校 이하 課程을 제외한다) 卒業者로서 在学중 所定의 教職学点을 復修한 者 3. 看護員免許證所持者로서 看護教師의 資格検定에 合格한 者				教師	1. 大学의 看護学科 卒業者로서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 2. 専門大学의 看護科 卒業者로서 在学중 所定의 教職학점을 履修 하고 看護員免許證을 所持한 者 3. <削除>						
備考 : 1 - 4 (省略)					1 - 4 (現行과 같음)							

4-89

한국